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43-81-05674

법인명(단체명) : (주) 남호특수고무

대표자 : 민승관

개업년월일 : 2012년 10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34811-0253617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80번길 57-6 (북양동)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80번길 57-6 (북양동)

사업의종류 : 업태 제조업 종목 산업용고무관

교부사유 :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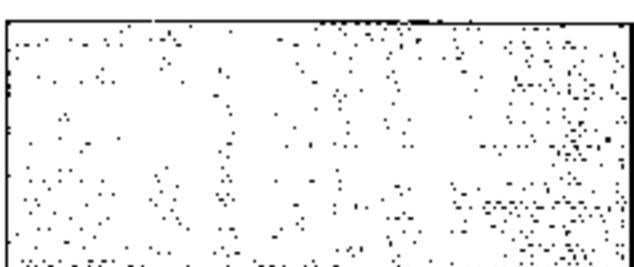
원본대조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2012년 10월 11일

화성세무서장



 국세청



제 KTR-18-0058호



제 품 인 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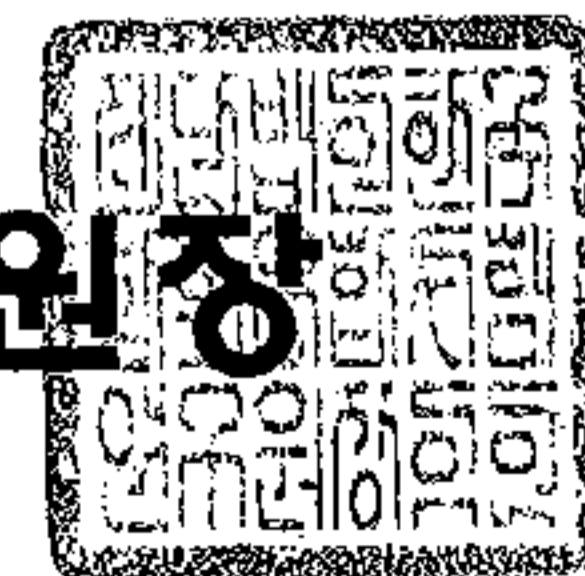
1. 제조업체명 : ㈜남호특수고무
2. 대표자성명 : 민승관
3. 공장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80번길 57-6(북양동)
4. 인증제품
 - 가. 표 준 명 : 수도용 고무
 - 나. 표준번호 : KS M 6613
 - 다. 종류 · 등급 또는 호칭
- 1종 1호, 3종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원본대조필

2018년 03월 09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1. 최초 인증일 : 2000-06-01
2. 최종 변경일 : 2018-03-09(인증기관 변경)
3. 정기심사기한 : 2018-03-09 ~ 2021-03-08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1. 인증번호 : KCW-2013-0017

2. 제조업체명 : (주)남호특수고무

3. 대표자 : 민승관

4. 본사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80번길 57-6 (북양동)

5. 공장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80번길 57-6 (북양동)

6. 제품명 : 수도용 고무

7. 종류, 등급 또는 호칭 : 별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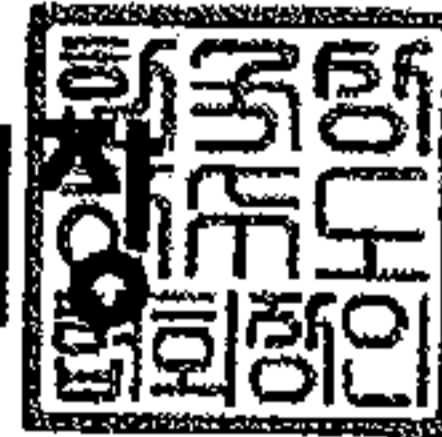
8. 용도 : 일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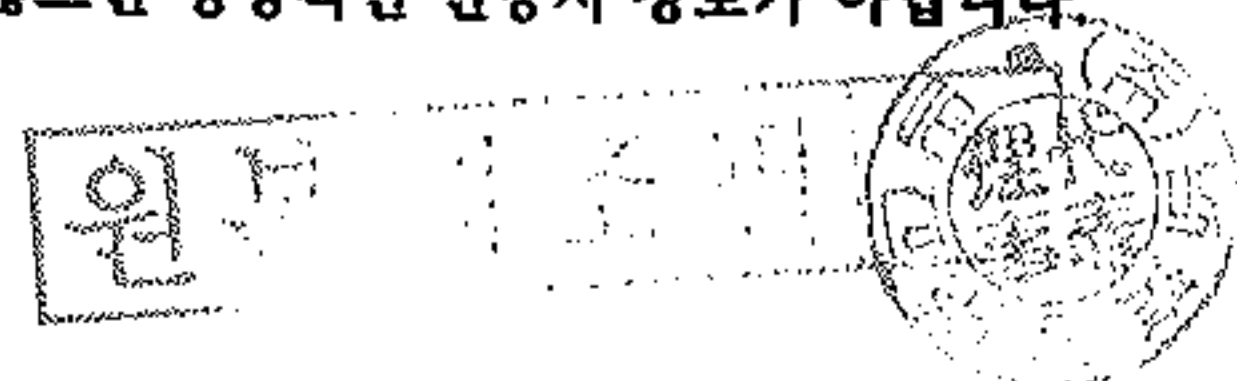
2013년 01월 17일



한국상하수도협회



* QR코드로 인증서 정보 이용 시 정보 URL이 "http://www.kctap.or.kr" 로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증서 정보가 아닙니다.



인증번호 : KCW-2013-0017

인증기업명 : (주)남호특수고무

출력일 : 2019년 04월 25일

출력자 : 위생안전인증팀 (IP:210.182.239.131)

<종류, 등급 또는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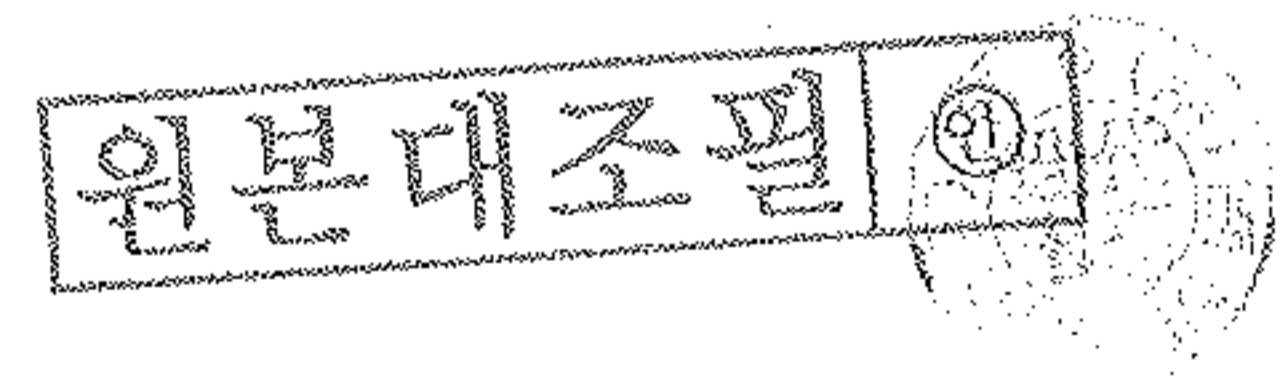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mm)	접촉 주요재질
1종1호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NR+SBR
3종	50, 65,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EPDM
※ 본 인증서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인증제품을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019.04.18	1. 정기검사 통과 - 대상 : '17.05.24 인증사항 - 다음 정기검사 신청기한 : '21.01.16 까지	2019년 제4차 인증심의위원회(2019.04.18)
2017.05.24	1. 정기검사 통과 - 대상 : '15.06.18 인증사항 - 다음 정기검사 신청기한 : '19.01.16 까지	제84차 인증심의위원회(2017.05.24)
2015.06.18	1. 정기검사 통과 - 대상 : '13.01.17 인증사항 - 다음 정기검사 신청기한 : '17.01.16 까지	제60차 인증심의위원회(2015.06.18)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출력일 : 2019년 04월 25일

출력자 : 위생안전인증팀 (IP:210.182.239.131)